

서울중앙지방법원

제 48 민사부

판 결

사 건 2020가합3531 손해배상(기)

원 고 별지1 원고들 목록 기재와 같다.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현대
담당변호사 김태훈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제이앤씨
담당변호사 구충서

피 고 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후주소 평양시 중구역 창광동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청사

대표자 국무위원장 김정은

2. 김정은

최후주소 평양시 중구역 창광동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청사

변 론 종 결 2022. 9. 20.

판 결 선 고 2022. 11. 10.

주 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김영희, 김하진, 윤형섭, 박광길에게 각 30,000,000원, 원고

권오기, 신수운, 윤창원, 민병덕에게 각 20,000,000원, 원고 김명금, 남성수에게 각 1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1. 6.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일부청구).

이 유

1. 청구의 표시

원고 김명금을 제외한 원고들 및 원고 김명금의 남편인 망 윤인길은 별지2 '청구원인 보충 및 규범적 근거(2022. 8. 26.자 준비서면 3 내지 17면)' 기재와 같은 민법상 비법인사단인 피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대표자 김일성, 김정일, 김정온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므로, 피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비법인사단에 준용되는 민법 제35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피고 김정온은 자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민법 제750조)을 진다. 이에 피고들에게, 원고 김명금을 제외한 원고들은 위자료의 지급을, 원고 김명금은 망 윤인길의 위자료 중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 중 일부인 10,000,000원의 지급을 각 청구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위자료 금액

불법행위가 이루어진 기간, 불법행위의 내용, 이로 인하여 원고 김명금을 제외한 원고들 및 망 윤인길이 겪었을 고통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각 위자료 금액은 적어도 원고들이 주장하는 금액 이상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재판장

판사

이기선

이 기 선



판사

현재언

현 재 언



판사

최윤영

최 윤 영



별지1

원고들 목록

1. 권오기

수원시 [REDACTED]

2. 김영희

의왕시 [REDACTED]

3. 김하진

용인시 [REDACTED]

4. 신수운

부천시 [REDACTED]

5. 김명금

포항시 [REDACTED]

6. 윤창원

서울 [REDACTED]

7. 윤형섭

서울 [REDACTED]

8. 남성수

군포시 [REDACTED]

9. 민병덕

상주시 [REDACTED]

10. 박광길

인천 [REDACTED]

열람용